

각급법원(제1,2심) 판 걜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1년 10월 10일

제218호

민 사

1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손해배상(기)) : 항소 ···· 597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조종실 창문 표면의 성에나 안개를 방지하는 장치의 결함을 발견한후 인천 국제공항으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결함을 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021,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위 국제항공은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 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항공기는 고도의 기 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장비이므로 운송인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음에도 항공기에 결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은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장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 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장치의 이상 여부는 중앙컴퓨터 장치 에 결함 메시지가 기록 및 표시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전 항공편 운 항을 마칠 때까지 위 장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 발을 위한 지상 점검 과정에서 위 장치 관련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직후 항공기 전체 전원을 재부팅하여 수회 점검하고, 정비위탁사로 하여금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음에도 위 장치 의 결함 메시지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던 점, 乙 항공사는 위 항공기가 10시간 동 안 운항하고 향후 기상예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탑승객의 안전 을 위하여 위 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출발지 인근에서 대체품을 구하지 못하자 인천 국제공항으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하여 이 사건 항 공기에 장착하였던 점,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게 항공기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 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 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 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 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 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 거가 없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침 인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 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으로 甲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 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뛰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특 허

③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608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 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중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

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內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內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內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뿌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뿌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을 뿌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뿌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 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甲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와 관련한 甲의 진술 등에 비추어 甲은 합의 무렵 乙 상가의 관리 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 로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乙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면 근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를 보다 확고히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을 보더라도 甲이 피고인과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의사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甲이 합의를 통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 서 乙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 하는 민사상 채무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에 대한 선관주 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丙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